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을 표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서울지하철 5호선 5-○공구 건설공사 시공 중 주변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주위건물 중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함으로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거 '91. 11. 14.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및 '92. 2. 21.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음
 -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 탈수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정된바 있으며, 위 안전진단비용을 당사에서 지출한 바 있음
 - 위와 같이 공사장 주변 건물을 공인된 타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보수한 경우로서 피해에 대한 귀책 소재가 시공자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답설> 안전진단 비용을 노동부고시에 명시된 사업자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함
- <을설> 사업장에 인접한 건물은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과 무관하므로 표준안전관리비 중 기본계상 비용이 아닌 별도계상 비용으로 취급해야 함
- <병설> 건물안전진단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와 전혀 무관하게 별도 처리하여야 함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 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현장주위 건물의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데 따른 민원야기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의 비용은 건설공사 자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서
 - 당해 현장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신안 32169-613, '92. 11. 25)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폐사는 본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시공을 위한 각종 계측을 실시하던중 천단침하현상이 나타나 감독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강작업 지시를 받아, 슛크리트보강 및 지반그라우팅 공법을 변경(S.G.R을 P.U.I.F로)하여 시공하면서 감독부로부터 당초 설계조건을 재검토하기 위한 TUNNEL 시공에 대한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지시를 받아 폐사에서는 전문건설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기 위하여 F.E.M 해석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설계변경시 도급금액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본 공사 수요처 감독부는 폐사의 F.E.M 해석 용역비에 대한 도급금액 추가 반영 요청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Q & A

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폐사에서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의 적용범위내에서 TUNNEL F.E.M 해석용역비를 건설공사 도급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F.E.M 해석 용역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설계변경시 도급금액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F.E.M 해석이란 유한요소법으로 연속체 문제의 해법에 있어서 이것을 작게 분할하고 그 분할된 각각의 유한요소에 관하여 근사적으로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를 구하고 전 요소에 대하여 종합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말함

A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TUNNEL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신안 32169-585, '92. 11. 6)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 정산할 수 있는지

Q

- 토목공사(공사기간: '90.12-'95.5)에 연계하

여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를 추가 수주(공사기간: '94.7-'95.8)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별도의 공사로 안전관리비를 계상(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산정기준)하였으므로, 후속 발주된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중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계상토록 하고 있는 표준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업주가 추가 수주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증원함이 없이 겸직시킴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발주자는 그 추가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함
- 한편, 발주자는 공사진행중에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공사 종료후 그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법 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고도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94.10.20 이전에 발주된 공사라면) 예 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07-278, '94. 10. 29)

- 관련고시 개정으로 '94. 10. 21 이후에 발주된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 95-6호, '95. 2. 23) 제9조 참조]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언제인가

Q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매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각 항목별로 초과된 부분은 감액 실시되고 있음. 연차공사로서 안전관리비를 매년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준공시 정산해야 하는지?

A

- 정산시기에 대하여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07-485, '94. 12. 19)

안전관리기사를 채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100% 삭감할 수 있는지

Q

- 저희가 아래와 같이 공사를 하여 준공하였으나 안전관리기사를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되었는데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기사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지, 안전관리기사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비 전액이 삭감되는 것인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공사명 : ○ ○시 여성회관 건립 조경공사
- * 도급액 : 이역사천구백칠십만원정 (₩249,700,000)
- * 안전관리비 : 사백육십사만구천일백칠십이원 (₩4,649,172)
(이에 따른 잡비 일백사십구만사천팔백십오원정 ₩1,494,815)
- * 공사기간 및 인원 : 약 2개월 1일, 15인 내외

A

- 고시 제91-57호('91. 9. 27)의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인건비의 5개 주요비용으로, 후자는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로 세분되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기본비용의 40%미만 사용가능)부분과 관계되는 “안전관리기사를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이같은 안전관리비는 공사착공시 선급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 귀사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범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고도 그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47-194, '93. 11. 8)
- * 참고 : '94. 10. 21 이후 발주된 공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감액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고시 제95-6호 제9조 참조)